

배포 2023. 10. 6.(금)

보도시점

(인터넷) 국회 본회의 통과 시

(지면) 국회 본회의 통과 시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은 높이고 피해학생은 보다 두텁게 보호한다

-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하위법령 정비 거쳐 2024년 1학기부터 시행
- 사안 발생 시 가해학생 접촉·협박·보복 금지 조치 의무화, 위반 시 조치 강화
- 피해학생 지원조력인제도 신설 및 행정쟁송에서 피해학생 진술권 보장
- 교원의 정당한 사안처리 및 생활지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면제
- 국가 책무성 강화를 위해 국가 수준의 학생 치유·회복 전문교육기관 설치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10월 6일(금), 국회 본회의에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학교폭력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달라지는 점은 다음과 같다.

①가해학생은 보다 엄정하게 조치한다.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가해학생은 피해학생과 신고자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가 금지(2호)**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6호 이상의 조치**(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를 받을 수 있다. 또한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이 긴급한 경우 가해학생을 **학교장 긴급조치로 학급교체(7호)**할 수 있다.

②피해학생은 보다 두텁게 보호한다. 가해학생이 학교폭력 조치에 대해 행정심판·소송을 제기한 경우 피해학생은 ‘**가해학생의 불복 사실**’과 ‘**심판·소송 참가에 관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고, 원하는 경우 피해학생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는 학교장에게 **가해학생의 출석정지(6호)** 또는 **학급교체(7호)**를 요청할 수 있고, 학교장은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가해학생에게 **긴급조치로 출석정지(6호)** 또는 **학급교체(7호)** 조치할 수 있다. 또한, 피해학생은 신설된 **피해학생 지원조력인(전담지원관)제도**를 통해 법률, 상담, 치유·보호 등의 서비스를 밀착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국가 수준에서 피해학생에 대한 전문적인 치유·심리 안정화 및 학업 지원을 전담하며 교육·연구 기능까지 갖는 전문교육기관을 설치하도록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함께 준비 과정을 거쳐 2026년 하반기에 국가 수준의 학생 치유·회복 전문교육기관을 개원할 예정이다.

③학교 현장의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력이 높아진다. 앞으로 교원은 정당하게 학교폭력 사건을 처리하거나 학생생활지도를 하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되며,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자체 해결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진다. 또한, 시도교육청 단위에 학교폭력 제로센터를 통해 학교 현장은 사안 처리를 지원받고 피해학생은 피해 회복·관계 개선과 법률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학교에서 교육 3주체(학생·교사·학부모)의 학교폭력에 대한 책임 의식 제고 등의 내용도 포함되었다.

이번 개정으로 지난 4월 12일 학교폭력대책위원회(총리 주재)에서 심의·확정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학생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며 학교 대응력이 제고되는 등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일부개정법률안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교육부는 법률 시행 전에도 우선 추진할 수 있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들은 지난 9월 1일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개정을 통해 현장에 적용하였다. 9월 1일부터 학교에서는 학교폭력 피·가해학생 즉시분리 기간을 3일에서 7일로 연장하고, 가해학생에게 전학조치와 다른 조치를 병과할 경우 전학조치를 우선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일부개정법률안에 포함된 피해학생의 진술권도 이미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개정을 통해 보장되고 있다. 가해학생이 조치 불복 시 피해학생에게 ‘가해학생의 불복 사실’과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참가’가 가능하다는 점을 피해학생에게 통지하여 피해학생의 진술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은 학교폭력을 근절하고 우리의 학교를 학생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안전하고 정의로운 학교로 탈바꿈시키는 시작점이다.”라고 말하며, “하위법령도 조속히 정비하여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이 2024년 3월 1일부터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붙임】** 1.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 세부 내용
 2.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관련 홍보지(리플릿)

담당 부서	책임교육지원관 학교생활문화과	책임자	과 장	문진철	(044-203-6972)
		담당자	사무관	김정민	(044-203-6987)
			사무관	김영권	(044-203-6978)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책임자	과 장	이창훈	(044-203-6170)
		담당자	사무관	김아름	(044-203-6173)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을 통해 지난 4월 12일 학교폭력대책위원회(총리 주재)에서 심의·확정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사이버폭력을 학교폭력에 포함하고, 사이버폭력의 정의를 신설하며 사이버폭력의 정의에서 ‘정보통신기기’를 ‘정보통신망’으로 변경하여 의미를 보다 명확히 한다.

나. 학교폭력 사안처리 및 예방교육 등에 관한 안내서를 개발·보급하여 학교에서 학교폭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다. 국가 수준의 학생 치유·회복을 위한 보호시설 운영, 연구 및 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학교폭력 대응 전문교육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폭력의 효과적인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라. 교육감으로 하여금 피해학생에 대한 종합적인 보호 강화를 위한 학교폭력 예방·대책 및 법률지원을 포함한 통합지원 전담부서 및 전문기관(학교폭력 제로센터)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전담기구 구성원 및 학교의 장·교감 대상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의무화한다.

마. 학교폭력 업무 담당하는 교사의 수업시간을 조정하고, 관계 법령 및 학칙을 준수하여 이루어진 정당한 학교폭력 사건 처리 또는 학생생활지도에 대하여는 교원의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한다.

- 바.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 중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에 ‘복구약속이 있는 경우’를 추가하고,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하여 피해학생 측이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는 경우 학교의 장이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권유할 수 있도록 한다.
- 사.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교사·학생·학부모 등 구성원이 책임을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교육부장관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사업자에게 배포하고 송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 아.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피해학생이 필요로 하는 법률, 상담, 보호 등을 위한 서비스 및 지원기관을 연계하는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전담지원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학생에 대한 긴급보호 조치에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을 추가하여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
- 자. 국가에서 사이버폭력에 의해 촬영물, 개인정보 등이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학생에게 촬영물 등의 삭제를 지원하고, 삭제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에게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 차.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하고,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을 인지한 경우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조치를 의무적으로 취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 시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한다.
- 카. 학교장 긴급조치에 ‘학급교체’를 추가하고, 피해학생 측의 요청 시 학교의 장이 긴급조치로 가해학생에 대한 ‘출석정지’ 또는 ‘학급교체’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도록 한다.

타. 행정심판위원회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 및 피·가해학생의 소속 학교에 행정심판 청구사실 및 심판참가 안내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안내하고,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에 관한 조문을 신설하여 행정소송 제기 사실 및 소송참가에 관한 안내사항을 피·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 및 피·가해학생의 소속 학교에 통지하고 소송참가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안내하도록 하고, 행정심판위원회 및 법원은 집행정지 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무적으로 의견을 청취하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신청 사실 및 그 결과를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 및 피·가해학생의 소속 학교에 그 사실 및 결과를 통지하여야 하며,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 경우 피해학생에게 분리 요청권을 부여한다.

파. 학교폭력에 관한 행정소송이 신속히 결정되도록 법률에 재판기간을 명시한다.

□ 동 개정으로 인해

- 학교폭력에 가해학생 엄정 대응, 피해학생 보호 강화, 학교 대응력 제고를 통해 학교폭력을 근절하여 우리의 학교를 학생들이 안심하고 공부할 있는 안전하고 정의로운 교육환경으로 탈바꿈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대한 학교폭력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합니다

○ 학생부 기록·관리 강화

- 보존기간 연장 **2년 최대 > 4년**
- 심의 석제 요건 강화

○ 조치사항 대입 반영 확대

- 학생부 위주 전형뿐만 아니라 수능, 논술, 실기/실적 위주 전형도 반영
- ※ 2025학년도 대입 자율 반영, 2026학년도 대입부터 의무화 반영

피해학생 중심으로 보호조치가 개선됩니다

- 3일 > 7일 즉시 분리기간 연장
- 학교장 긴급조치 강화
- 피해학생의 분리요청권 도입
- 피해학생 진술권 보장
-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 도입

단위학교에 대한 학교폭력 대응력을 제고합니다

○ 학교폭력 제로센터 운영

- 피해회복·관계개선, 학교 사안처리, 피해학생 법률 서비스 등 통합제공

○ 학교의 교육적 조정기능 강화

- 학교장 자체해결 범위 확대
- 교권보호 및 학교폭력 책임조사 업무 여건 개선
- '학교·학생·학부모' 간 책임계약 시범운영



학생 사회·정서교육과 인성교육을 지원합니다

○ 언어·사이버폭력 예방교육 및 학부모 교육 강화

○ 학생 사회·정서 지원체계 구축

○ 다양한 인성교육을 활성화

- 학교스포츠클럽(1교당 11개 → 1교당 20개)
- 예술동아리 확대(1교당 1개 → 1교당 2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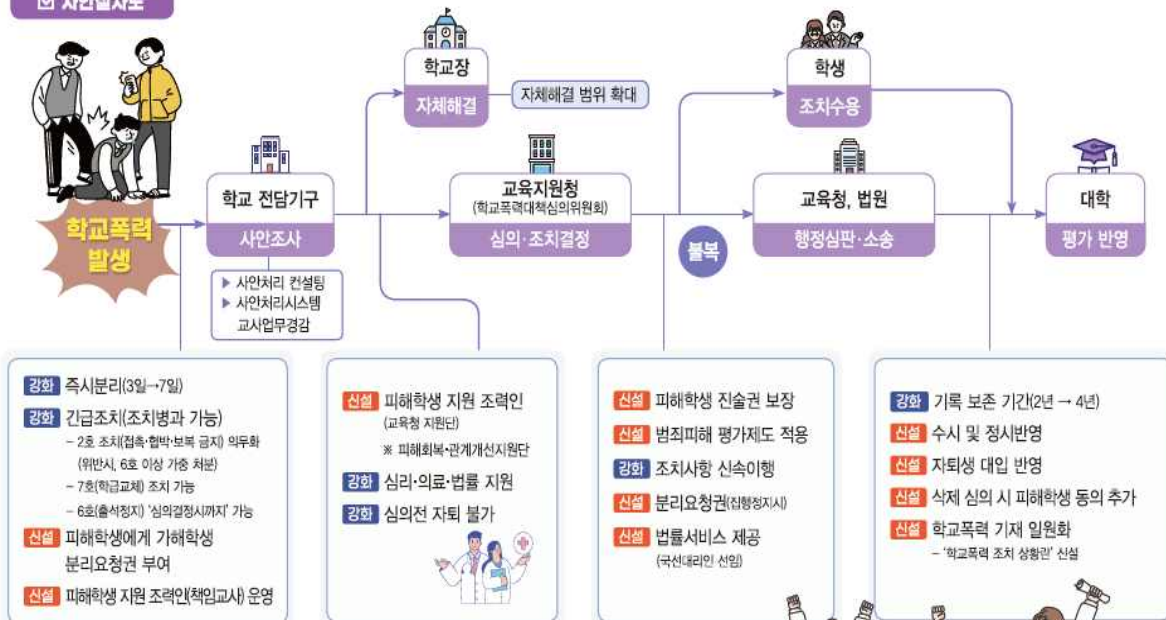
학교폭력 없는
안전하고
정의로운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발표('23. 4. 12)
「학교폭력예방법, 개정('23. 10. 6) 및 시행('24. 3. 1)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으로 학교폭력 대응절차 이렇게 달라집니다

사안절차도



강화 즉시분리(3일~7일)
강화 긴급조치(조치병과 가능)
 - 2호 조치(접촉·협박·보복 금지) 의무화 (위반시, 6호 이상 가중 처분)
 - 7호(학급교체) 조치 가능
 - 6호(출석정지) '심의결정시까지' 가능
신설 피해학생에게 가해학생 분리요청권 부여
신설 피해학생 지원 조력(책임교사) 운영

신설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 (교육청 지원단)
 ※ 피해회복·관계개선지원단
강화 심리·의료·법률 지원
강화 심의전 자동 불가

신설 피해학생 진술권 보장
신설 범죄피해 평가제도 적용
강화 조치사항 신속이행
신설 분리요청권(집행정지시)
신설 법률서비스 제공 (국선대리인 신설)

강화 기록 보존 기간(2년 → 4년)
신설 수시 및 정시반영
신설 자퇴생 대입 반영
신설 식재 심의 시 피해학생 동의 추가
신설 학교폭력 기재 일원화 - '학교폭력 조치 상황관' 신설

학교폭력 예방·대응 인프라 강화

- 학교폭력 제로센터 설치 운영**
 - 사안처리 컨설팅 지원
 - 피해회복·관계개선 지원
 - 법률서비스 지원
- 피해학생 맞춤형 지원 체계 강화**
 - 국가수준의 학교폭력 대응 전문교육기관 설치·운영
 - 피해학생 전문지원 기관 확대(303개소 → 400개소)
 - 법률구조서비스·국선대리인·마을번호화
 - 방·의원 협약·위탁, 정신건강 자문의
- 학교폭력 조기 감지 체계 구축**
 - 학교-경찰(SPO) 협업 감지
 - 사이버폭력 감지 서비스
 - 지능정보기술 활용 감지 기반 마련

주요내용

구분	면과(8호) 조치 학생부 기록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조치 학생부 기록	면과·형법 통급지(2호)	대입반영
가해학생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입후 최대 2년 보존 출입 후 최대 4년 보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학·출입 후 최대 2년 보존 예외: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기록 삭제 가능 원학·출입 후 최대 4년 보존 예외: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기록 삭제 가능 심의요건 충족: 피해학생 동의, 가해학생 진술·소송 진행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반시 조치 병과 또는 기준 중속·합법 반복 행위여 비대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도 포함 학교폭력 사안 발생 즉시 조치 의무화 위반사건 이상 조치 의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생부 종합영양에서 주로 학교폭력 조치 사항 반영 학령제, 수능, 논술, 실기/실기 위주 전형에 조치사항 반영 지휘관 가해학생의 '조치병과' 학생부에 표기되어 내입 반영 지원
피해학생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즉시 분리 기간: 3일 7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장 긴급조치: 1, 2, 3, 5호; 6호(출석정지, 10일 이내) 1, 2, 3, 5호; 6호(출석정지, '심의결정시' 까지); 7호(학급교체) ※ 피해학생에게도 6, 7호 요청권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해학생 조치 불복시: 피해학생 불복 사실을 알 수 없어 진술권 보장이 한계 교육청 또는 교육감이 불복사실 통지하여 진술권 보장 심사 소송 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해학생 서비스 지원 미흡 피해학생에게 필요한 심리적인 법률, 의료 서비스 등을 해당 연내
현행 대비 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안처리 지원: 체계적 지원체계 미흡 학교폭력 제로센터 설치 등 통한 현장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의 권한: 「학교폭력예방법」 등 법령, 패시위에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등 법령, 패시위에 근거 「학교폭력 책임계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폭력 대응 여건: 학교폭력 전용 업무 과중여 따른 기피 4세대 나이스와 연계한 「학교폭력 사안처리 시스템」 운영 학교폭력 책임교사 수업감감 	
근거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심리·평가 교육: 학교 개별적으로 운영, 체계적 지원체계 미비 관련법 제정, 전달부서 신설 등 학생 사회 정서 지원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성·체육·예술 교육: 학교스포츠클럽 평균 1교당 11개; 예술동아리 평균 1교당 1개 학교스포츠클럽 평균 1교당 20개; 예술동아리 평균 1교당 2개; 국가교육위(인성교육특위)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방교육: 교과 연계, 체험 중심 예방교육 교과 연계, 체험 중심 예방교육 디지털 기술 및 학생 친화적 매체 활용 	